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51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의의	3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9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2
1. 제명, 목적	12
2. 정의	13
3. 유족의 범위 등	15
4.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등	17
5.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등	21
6. 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등	25
7. 위원의 보호,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불이익 금지 등	28
8.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32
9. 신고 및 신청의 각하·기각,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	34
10.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및 심의와 결정 등	39
11. 조세 면제	42
12. 소멸시효, 환수 등	44
13.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47
14. 공무원의 파견 등	4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6.
3. 회 부 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동원으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함.

그 중 일본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그동안 강제동원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진상 조사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그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피해자 및 미수금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함(안 제19조).

마.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5조).

바. 정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과 피해자 장례 및 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7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의의

장생탄광 사건은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長生,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되어 작업중이던 조선인 136명이 희생된 사건임.

《 장생탄광 강제동원 개요 》

- **배경:** 대일항쟁기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조세이}(長生) 탄광 강제동원
- **관련 사건:** 장생탄광 수몰사고(1942.2.3.)
 - 일본 장생 탄광에 강제동원되어 채탄작업이던 조선인 136명 사망
- **진상조사 결과:** 대일항쟁기위원회 활동 당시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05.3.~'06.12.) 및 위로금 지급(45명) 완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2차 사고 방지를 이유로 갱구(坑口)를 폐쇄하였고, 이에 희생자들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후 2004년 제정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생탄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2005.4.~2006.12.)를 실시하였고, 일부 희생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한 바 있으나,¹⁾ 유해발굴 및 봉환은 갱구 봉쇄로 인한 기술적인 어려움과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²⁾

1) 조선인 희생자 명부 136명 중 76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45명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2024년 9월 일본 시민단체 ‘장생 탄광 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회’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탄광의 갱구가 발견되었고,³⁾ 2025년 8월 25일과 26일 희생자 인골로 추정되는 뼈가 수습되는 등⁴⁾ 유해발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이는 큰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한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의 활동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었고, 현재 장생탄광을 포함한 대일항쟁기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임.

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생탄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임.

또한 2025년 11월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조세이탄광·사도광산에

2) 일본 정부는 유해의 매몰 위치나 깊이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KBS뉴스, “수몰된 일본 해저탄광엔 아직도 조선인들이…국가의 존립 이유는?”, 2025.2.8.

3) 연합뉴스, “日시민단체, ‘조선인 136명 수몰’ 해저탄광 유골 발굴조사 개시”, 2024.9.24.

4) 연합뉴스, “‘조선인 136명 수몰’ 日해저탄광서 희생자 인골 추정 뼈 발견(종합)”, 2025.8.25.

연합뉴스, “‘조선인 136명 수몰’ 日해저탄광서 희생자 추정 두개골도 발견(종합)”, 2025.8.26.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과 인도주의 협력'이 합의문에 포함되었고,⁵⁾ 2026년 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장생탄광 수습 인골의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⁶⁾ 진실규명을 위한 한일 양국의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입법 추진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가 2006년 완료된 점, 최근 진행된 상황들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닌 유해발굴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한 추가 진실규명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⁷⁾

또한 한일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수몰된 유해의 발굴 및 봉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보다는 행정안전부 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등 기존 조직을 통한 사업추진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주간조선, “바다에 묻혀버린 조선인 136명...84년 전 조세이탄광에선 무슨 일이?”, 2025.12.28.

6) KBS뉴스 ““다카이치가 먼저 꺼냈다”...‘조세이 탄광’ 136명 수몰 사고는 [이런뉴스]“, 2026.1.15.

7)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조세이탄광은 사고 직후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사고외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큼 규모가 큰 탄광이 아니었기에 관련자료가 극히 부족하다. 많은 연구가 지속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관련 논문·기록·연구 등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롭게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2007, p.2.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에서 장생탄광 수몰사고 관련 희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실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향후 희생자의 유해발굴이 이루어져 희생자 유족으로 확인되는 경우⁸⁾ 「강제동원조사법」의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위로금등의 지급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임.⁹⁾

아울러, 현재 「강제동원조사법」 관련 제정안 및 일부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제·개정안들의 입법 경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¹⁰⁾ 2026년 2월 26일 출범 예정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한 진실규명 추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8) 유족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희생자 유해발굴 시 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기존 데이터와 매칭하여 희생자 유족임을 확인하는 구조임.

9)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강제동원조사법」 관련 제·개정안의 입법 경과에 따라 장생탄광을 포함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전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강제동원조사법」 제·개정안 발의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윤후덕의원안 (2024.9.23.발의)	▶ 자료를 새로 확보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진상 재조사 실시, ▶ 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 등
한정애의원안 (2024.10.10.발의)	▶ 법률제명 개정, 위원회 설치·재개 ▶ 위로금 등 지급대상 확대, 미수금 지원금액 현실화, 재단 지원 근거 삭제 등
윤상현의원안 (2024.12.2.발의, 제정안)	▶ 현행법 폐지 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위로금 등 지급대상 확대 지급금액 상향, 재단 설립 등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26.)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매번 개별 사건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루는 ‘개별주의’로 갈 것인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으로 다루는 ‘포괄주의’를 채택할 것인지 국가적 대원칙이 정립될 필요가 있고, 개별 사건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그동안 쌓아온 조사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¹⁾

11) 제22대국회 제428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5.8.26.)

○**박수민 위원**: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과거사를 다루는 포괄주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개별 사건별로 개별법을 하는 개별주의로 가는 것인지? 이거는 국가가 이런 근대사의 비극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어떤 원칙적인 걸 좀 정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국내든 국외든 그동안 다뤄 왔던 건 진화위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상 문제로 가고 그 시행착오와 경험이 거기에 다 진화위에 녹아 있을 텐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필요성과 효과성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간하게 보는 면은 이게 법이 통과되면 별도의 위원회 설치되는 거지요? 사무국 설치되는 거지요? ... 그러면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조직이 생겨지는데 사실은 진화위에서 그 비용을 써서 연구용역을 더 충실히 하고 거기서 또 그 재원 갖고 저희가 보상할 분들이 생기면 더 보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공조직만 커져서 피해자들 진실규명이나 보상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별도 조직이 생기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장생탄광 피해자 위로금 지급, 진상규명 위원회의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추모공원 조성·운영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542억 9,100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6년 》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합 계
위로금	1,820		-		-		-		-		1,820
진상규명 위원회 운영비	1,846	1,883	1,921	1,959	1,998	2,038	2,079	2,120	2,163	-	18,006
결과보고서 작성	-	-	-	-	-	-	-	-	275	351	626
추모공원 조성·운영	5,352	5,352	5,352	5,352	5,352	1,359	1,387	1,414	1,443	1,471	33,839
합 계	9,018	7,235	7,273	7,311	7,350	3,397	3,466	3,534	3,881	1,822	54,291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등의 수급 기회를 부여하여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희생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강제동원조사법」 관련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므로, 해당 제·개정안들의 입법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칙 44개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체계 》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4조	위로금	
	제5조	미수금 지원금	
	제6조	의료지원금	
	제7조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8조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1조	위원의 보호 등	
	제12조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제13조	비밀준수의무	
	제14조	불이익의 금지	
	제15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6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	의결정족수	
	제19조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20조	사무국의 설치	

구분	조문 내용		비고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2조	신고 및 신청의 각하	
	제23조	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제24조	신고 및 신청의 기각	
	제25조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	결정 등	
	제27조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제28조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제29조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제30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제31조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32조	조세 면제	
	제33조	소멸시효 등	
	제34조	환수 등	
	제35조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	
	제38조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제3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40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	벌칙	
	제44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관련 자료 수집·분석, 유해 발굴·수습·봉환,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등의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함.

둘째,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장생탄광에 강제동원되어 노무자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 “미수금 피해자”를 해당 시기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미수금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으로 정의함.

셋째, 국가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에 대해 규정하고,

넷째,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피해 조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다섯째, 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이하부터는 조문별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목적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그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을 통한 국민화합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규정하여,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있음.

다만, 앞서 검토한 것처럼 일제강점기장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희생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는바, 추가적인 진실규명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등의 수급 기회를 부여하여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장생탄광 수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미 완료되어 일부 희생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조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입법 이외에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한 조사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장생탄광에 강제동원되어 노무자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미수금피해자”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장생탄광에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은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장생탄광에 강제동원되어 노무자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 “피해자”를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미수금피해자”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노무자 등으로 장생탄광에 강제 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이는 진상규명 대상 피해와 그 피해자, 미수금 등의 범위를 정의규정을 통해 구체화·명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제1호가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시간적 범위를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동원조사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바,¹²⁾

제정안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전체가 아닌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에 집중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시간적 범위를 보다 축소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12)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3. 유족의 범위 등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및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④ 사망한 피해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친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서 위원회가 결정한 자로 규정하여 안 제4조의 위로금 및 안 제5조의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순위로 삼고 있음.

이는 「민법」의 상속순위와는 다르지만,¹³⁾ 「강제동원조사법」 등에서 지원금 지급 시 특별히 정하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준용한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 유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유족의 범위 등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④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4.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등

제4조(위로금) 국가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제정안은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에 대해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강제동원조사법」의 위로금 등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1명당 2천만원, 미수금 일본국 통화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는 해당 규정은 2010년 「강제동원조사법」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인바, 2026년 현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	제4조(위로금)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조(미수금 지원금) 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존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置)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안 제7조의 위로금 등 지급 제외 규정은 중복지원 방지 등을 고려한 장치로 보이나, 「강제동원조사법」 제7조제3호가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위로금등 지급 제외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7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존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헌법재판소도 일본 거주자의 대일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일괄타결대상에서 배제되어 이들에 대한 보상 등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헌법재판소 결정, 2011헌바55(2015.12.23.) 주요내용 》

국외강제동원자 지원법이 일본 거주 피징용부상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일본 거주자의 대일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일괄타결대상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들의 대일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보상 내지 지원은 1차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피징용부상자라고 하더라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일괄타결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일본 거주자를 국내 거주자와 달리 규율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정안 제7조는 현행 「강제동원조사법」 제7조제3호와 달리 일본 거주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타 강제동원 사건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동 지원내용은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의 지원체계와 유사하며, 적용가능한 일반법 체계가 이미 존재하므로 별도 법률을 통한 지원규정 신설의 실익이 없고, 법률 제정 시에도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정은 공식 진상규명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조사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안 제6조에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안 제8조의 위원회의 소관 업무에는 피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강제동원조사법」에 의한 위원회가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을 참고할 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려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안 제9조제5항 후단의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표현은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표현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 보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u>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정안 제8조는 안 제6조에서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정안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의 설치 및 그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

《 분과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국무총리 소속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을 법률로써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들을 참고하여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무총리 소속 유사 과거사 위원회 조직 관련 입법례 》

구분	소속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무총리	○ (제5조제5항)	X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X	X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X	X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6.12.31. 시행예정)		X	X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타 과거사 관련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량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설치·운영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7. 위원의 보호,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불이익 금지 등

제11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안은 위원의 보호 등,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비밀준수의무,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위원의 보호,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불이익 금지 등	제11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안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이었던 자”라는 표현은 한자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법제원칙과 안 제16조제1항 및 각호와의 통일성,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배우자이었던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자/사람 표현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26. 2. 26. 시행예정)
자/사람 표현 관련 입법례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5. (생략)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5. (생략)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8. 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 위원회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소관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사 종료 이후 위로금 등의 지급 심의 및 결정, 결과보고서 작성,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후속업무 처리를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부여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발의시점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5년 12월 31일까지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유사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그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유사 과거사 위원회 존속기간 관련 입법례 》

구분	반민족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
존속기간	• 2005.5.31.~2009.11.30. (4년 6개월)	• (1기 진실화해위원회) 2005.12.1~2010.12.31. (약 5년 1개월) • (2기 진실화해위원회) 2020.12.10~2025.11.26. (약 4년 11개월)	• 2022.1.21.~2026.10.4. (약 4년 8개월)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량 및 타 과거사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신고 및 신청의 각하·기각,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신고 및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2.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3.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유해 발굴을 포함한다)
4.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거나 유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요구
5.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요청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7. 신원 확인을 위한 유해 및 유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및 분석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유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취합·관리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① 위원회는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제26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정안은 직원의 신분보장, 신고 및 신청의 각하·기각, 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피해진상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신고 및 신청의 각하·기각,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신고 및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2.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거나 유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 요구 5.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유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취합·관리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신고 및 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제26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	---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안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신원 확인을 위한 유해 및 유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및 분석”을 규정하면서도 그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유전자 검사 자료 보관 및 관리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유전자 검사 자료의 보관 및 관리	제11조(유전자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유전자 분석 절차 및 기준의 통일
성, 시료 관리 및 이력 추적, 데이터 및 기록의 통합 관리 등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 기관의 지정 및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⁴⁾

14) 참고로, 행정안전부 내 유전자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가 있음.

10.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및 심의와 결정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③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5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28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진상조사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정안은 관련 절차의 규정을 통해 위로금등 지급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을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등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③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5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28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진상조사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1. 조세 면제

제32조(조세 면제)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이 법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등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위로금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은 피해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인정되고,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조세면제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한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¹⁵⁾ 이를 개별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실제 조세면제가 이루어지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하므로 해당 조문의 개정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15)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이하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생략)

《 조세 면제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조세 면제
강제동원조사법	제32조(조세 면제)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규정 가능한 사항으로, 제정안의 규정은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도 세법이 아닌 개별법에 세제지원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동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소멸시효, 환수 등

제33조(소멸시효 등)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4조(환수 등)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정안은 이 법에 의해 발생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일을 그 지급신청일로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후 신청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위로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소멸시효, 환수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멸시효 등	제33조(소멸시효 등)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환수 등	제34조(환수 등)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는 위로금등을 전부 회수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전부 환수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지원금의 전부 환수 단서 규정 관련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안 제35조~제36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¹⁶⁾

16) 「강제동원조사법」 제35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3.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제37조(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
2. 피해자 장례 및 유해봉환 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장생탄광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제3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과 장례 및 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한 위령사업과 사료관·박물관의 건립 등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성 또는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심리치료 지원과 재단 설립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보조 등은 유사 입법례가 있으나, 장례 및 유해봉환 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관련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심리치료 및 피해자 재단 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강제동원조사법
심리치료 지원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동 지원내용은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의 지원체계와 유사하며, 적용가능한 일반법 체계가 이미 존재하므로 별도 법률을 통한 지원규정 신설의 실익이 없고, 법률 제정 시에도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정은 공식 진상규명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4. 공무원의 파견 등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시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나, 공무원의 파견 등과 관련하여서는 「강제동원조사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는 반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위원회 관련 법률에는 공무원의 파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공무원의 파견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강제동원조사법
공무원의 파견	제39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정안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파견은 기관 범위 밖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예외적인 인사제도로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기관의 균형적·효율적 인력활용, 파견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일방의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침해 등 인사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파견요청 등에 따라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안 제40조제1항 후단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